

의안번호	2207737
의 퇴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5.2.7.
추계번호	25E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하고, 기본공제대상의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6조 8,291억원, 2030년 5조 910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6조 4,657억원(연평균 5조 2,931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확대 (안 제50조제1항)	-68,291	-50,536	-46,359	-48,562	-50,910	-264,657	-52,931

주: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 상향조정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금액 인상 - (현행) 1명당 150만원 → (개정안)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기준 조정 - (현행) 20세 이하 → (개정안) 24세 이하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u>24세</u> 이하인 사람,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u>24세</u>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종합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 - (개정안) 종합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u>700만원</u> 이하)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변화분 추계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연동¹⁾되어있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완화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의 신청자수 및 공제대상 자녀수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기본공제)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5조원, 27.0조원으로 각각 2018~2023년 동안 연평균 2.4%, 8.4% 증가

[표 2]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12,109	12,237	12,916	13,629	13,959	12,970
(증가율)	(6.7%)	(1.1%)	(5.5%)	(5.5%)	(2.4%)	(4.2%)
공제금액	340,508	342,641	353,294	364,928	365,300	353,334
(증가율)	(4.9%)	(0.6%)	(3.1%)	(3.3%)	(0.1%)	(2.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7,463	7,844	9,333	10,270	11,475	9,277
(증가율)	(8.1%)	(5.1%)	(19.0%)	(10.0%)	(11.7%)	(10.7%)
공제금액	189,941	193,490	223,350	240,548	269,772	223,420
(증가율)	(5.2%)	(1.9%)	(15.4%)	(7.7%)	(12.1%)	(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자(소득세 신고자) 수 및 공제금액 자료만을 제공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20세에서 24세로 완화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수 및 이들의 공제대상 자녀 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통계연보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2년 귀속)²⁾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소득규모(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별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한 후, 개정안에 따른 소득규모별 공제금액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세수 효과 추계
-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실험분석결과 활용, 출산입양공제는 연령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추계 결과

-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하고, 기본공제대상의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소득세는 2023년 기준 3조 7,745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본공제 규모 확대로 3조 5,234억원, 자녀세액공제 규모 확대로 2,51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2,247	-1,061	-23,307
종합소득세	-12,988	-1,450	-14,437
합계	-35,234	-2,510	-37,745

주: 기본공제는 2023년 귀속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함에 따라 2023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를 제시하였고, 자녀세액공제는 2022년 귀속 자녀수별 세액공제금액 자료(국세청 제출)를 활용함에 따라 2022년 귀속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의 경우 최근 5년 기본공제금액의 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향후 제도변화를 반영한 증가율 적용
 - (기본공제) 근로소득세 2.4%, 종합소득세 8.4%의 증가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8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22년 이후는 2019~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로 증가하고, 2023년은 추가적으로 7~24세 이상 인구에서 7세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4.7%)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2) 재정패널조사 2023년 조사자료는 2022년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연도에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 가계지출현황, 복지현황 등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임

[표 5]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277,964	386,760	-	108,795	-	-22,247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528	2,078	36.0	550	6%	-11
2천만 이하	7,331	10,051	37.1	2,720	6%	-163
3천만 이하	30,782	42,232	37.2	11,450	6%	-687
4천만 이하	33,540	45,914	36.9	12,374	15%	-1,856
4.5천만 이하	15,599	21,599	38.5	6,000	15%	-900
5천만 이하	16,800	23,117	37.6	6,317	15%	-947
6천만 이하	33,417	45,985	37.6	12,568	15%	-1,885
8천만 이하	55,958	78,027	39.4	22,068	24%	-5,296
1억 이하	37,415	53,073	41.8	15,658	24%	-3,758
2억 이하	41,398	58,847	42.1	17,448	35%	-6,107
3억 이하	2,960	4,192	41.6	1,232	38%	-468
5억 이하	931	1,242	33.3	310	40%	-124
10억 이하	259	346	33.3	86	42%	-36
10억 초과	44	59	33.3	15	45%	-7

주: 1)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기본공제금액 추정치로,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5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종합소득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214,898	298,115	-	83,216	-	-12,988
1천만 이하	35,093	47,449	35.2	12,355	6%	-741
2천만 이하	47,140	64,879	37.6	17,739	6%	-1,064
3.5천만 이하	47,772	66,388	39.0	18,616	15%	-2,792
4천만 이하	10,626	15,003	41.2	4,377	15%	-657
5천만 이하	16,103	22,805	41.6	6,701	15%	-1,005
6천만 이하	11,656	16,091	38.1	4,436	24%	-1,065
8천만 이하	15,655	21,810	39.3	6,155	24%	-1,477
1억 이하	9,028	12,887	42.7	3,859	24%	-926
2억 이하	14,989	21,462	43.2	6,473	35%	-2,266
3억 이하	3,287	4,382	33.3	1,096	38%	-416
5억 이하	2,034	2,937	44.4	903	40%	-361
7억 이하	670	894	33.3	223	42%	-94
10억 이하	405	540	33.3	135	42%	-57
10억 초과	440	587	33.3	147	45%	-66

주: 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기본공제금액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결정세액 있는 자 수를 곱하여 추계
 2)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종합소득금액 7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¹⁾	개정안 공제금액 ²⁾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³⁾⁴⁾	세수효과
	A	$B=A \times (1+C\%)$	C	$D=A-B$
합계	6,806	7,906	-	-1,100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	-	-	-
2천만 이하	0.1	0.1	34.1	0
3천만 이하	32	41	27.5	-9
4천만 이하	221	253	14.2	-31
4.5천만 이하	233	273	17.4	-40
5천만 이하	341	386	13.2	-45
6천만 이하	882	1,003	13.8	-121
8천만 이하	1,991	2,278	14.4	-287
1억 이하	1,375	1,621	17.9	-246
2억 이하	1,563	1,857	18.8	-294
3억 이하	121	140	15.5	-19
5억 이하	35	40	15.5	-5
10억 이하	10	11	15.5	-2
10억 초과	2	2	15.5	0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세액공제금액 추정치로,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 수행이 불가하므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8]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¹⁾	개정안 공제금액 ²⁾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³⁾⁴⁾	세수효과
	A	$B=A \times (1+C\%)$	C	$D=A-B$
합계	4,874	6,365	-	-1,491
1천만 이하	488	661	35.7	-174
2천만 이하	960	1287	34.1	-327
3.5천만 이하	1,086	1505	38.6	-419
4천만 이하	247	340	37.7	-93
5천만 이하	383	496	29.6	-113
6천만 이하	301	341	13.4	-40
8천만 이하	442	512	15.9	-70
1억 이하	264	354	33.7	-89
2억 이하	457	568	24.1	-110
3억 이하	113	140	24.1	-27
5억 이하	75	90	20.1	-15
7억 이하	26	32	20.1	-5
10억 이하	16	20	20.1	-3
10억 초과	17	21	20.1	-3

주: 1)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4)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변화율의 추세가 일정치 않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 증가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27조 7,791억원(연평균 4조 6,2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4,410	-24,981	-25,566	-26,164	-26,777	-27,404	-155,302	-25,884
종합소득세	-16,763	-18,071	-19,487	-21,019	-22,677	-24,472	-122,488	-20,415
합계	-41,173	-43,052	-45,053	-47,183	-49,454	-51,876	-277,791	-46,298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³⁾ 소득세수는 2026년 6조 8,29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6조 4,657억원(연평균 5조 2,9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6년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26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3,146	-31,811	-26,164	-26,777	-27,404	-155,302	-31,060
종합소득세	-25,145	-18,725	-20,194	-21,785	-23,506	-109,355	-21,871
합계	-68,291	-50,536	-46,359	-48,562	-50,910	-264,657	-52,931

주: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 완화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6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6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6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7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8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